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08,790,688	12,263,721
일반회계	405,112,270	12,153,368
특별회계	3,678,418	110,353
기타특별회계	3,678,418	110,353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818,599	54,558
주택사업특별회계	140,921	4,2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10,593	27,31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73,305	17,199

제 2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642,319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거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

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